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11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103190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사단법인 대전광역시 척수장애인협회
피 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변 론 종 결	2017. 10. 18.
판 결 선 고	2017. 11. 8.

주 문

1. 피고가 2016.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세(종업원분) 합계 11,181,970원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1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8. 16. 대전광역시의 척수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기 위하여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사업, 척수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재활사업, 척수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작업장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3항에 따라 주민세(종업원분)가 면제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는 이유로 주민세(종업원분)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6. 10. 5.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2016년 1월분부터 2016년 6월분까지의 주민세(각 가산세포함) 합계 7,805,7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10. 24. 피고에게 주민세(종업원분) 2016년 7월분 및 8월분 합계 2,680,8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1. 8. 이 사건 부과처분과 신고·납부한 2,680,890원(이하 '주민세 신고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장은 2017. 3. 2. 주민세 신고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2017. 5. 29.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2016년 7월분부터 2017년 3월분까지의 주민세(종업원분) 11,181,970원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29. 원고의 주민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1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민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에 열거된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매우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법적근거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 본문의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의미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 본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사회복지법인 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11

인 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1.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定)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을 것, 3. 단체의 수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어목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을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 본문의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위에서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11

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본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은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규정은 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58호로 개정당시 신설된 규정으로서, 신설된 취지에 관하여 보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취득세가 면제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범위를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며, 단체의 수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법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로 한다는 것이다.

(2) 위 개정취지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범위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 열거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11

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 본문의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위에서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로 한정하지 않을 경우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이 부당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으로 '사회복지법인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서 각 규정하는 감면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 본문의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위에서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 본문의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 본문의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고의 정관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제2조(목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11

이 법인은 대전광역시의 척수장애인협회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함으로써, 척수장애인협회 회원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척수장애인을 비롯한 영세중증장애인들의 의료재활, 직업재활, 교육재활을 통한 진정한 사회통합과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사회재활에 앞장서며 대전광역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사업
2. 척수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재활사업
3. 척수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작업장 사업
4. 정보제공 간행물발행 및 인쇄사업
5. 장애인복지관 수탁운영사업
6. 재가복지시설 운영사업
7. 주간, 단기보호시설 운영사업
8. 그룹홈 운영사업
9.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1조(자산의 구분)

①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
2. 본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3.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
4.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기본재산에 편입한 재산

제22조(자산의 관리)

① 본 법인의 재산은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매각, 양도, 교환,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 후원 및 기타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매년 정기총회 전에 재산을 재평가하여 이를 총회준비위원회의 의결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경비)

① 법인의 경비는 임원 또는 회원의 회비 및 후원자들의 기부금이나 찬조금, 정부 보조금, 기본재산, 수익사업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26조(잉여금의 처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11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41조(수익사업의 종류)
① 이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원에서 임명한다.
③ 본 법인의 수익사업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인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53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나) 원고는 2011. 10. 5. 피고로부터 구 장애인활동법(2015. 12. 29. 법률 제136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구 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2016. 12. 30. 보건복지부령 제4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활동보조)으로 지정되어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장애인활동법 제27조 제1항의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를 제공하고 있다.

다) 원고의 정관상 설립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어목에 의하여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라) 원고는 정관을 제정하여 위 정관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원고의 대표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11

가 선임되어 있으며, 원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원고의 일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도록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다.

마) 원고는 장애인활동법에 따라 지정된 활동지원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장애인활동법 제20조 제1항),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요청받았을 때에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장애인활동법 제22조 제1, 2항).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 기준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장애인활동법 제22조 제6항,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원고의 감사는 원고와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2조 제1, 4항).

3)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 단서 해당 여부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 단서는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은 '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11

1항 제2호는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5. 29. 대통령령 제28074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주민세(종업원분)은 2019. 12. 31.까지 면제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처분에 의한 원고에 대한 주민세(종업원분) 중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 단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따라 원고의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민세(종업원분)가 면제되는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주민세(종업원분)를 부과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원고의 주민세(종업원분)은 2019. 12. 31.까지 면제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11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방승만

판사 김종찬

판사 임한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11

(별지 1)

처분 목록

- 과세일자 : 2016. 10. 5.
- 세액 : 본세 6,767,890원, 가산세 1,037,870원 (합계 7,805,760원)

세목명(가산세 포함)	귀속년월	본세(원)	가산세(원)
주민세(종업원분)	2016년 1월분	1,099,140	178,820
주민세(종업원분)	2016년 2월분	1,122,400	171,830
주민세(종업원분)	2016년 3월분	1,134,340	163,790
주민세(종업원분)	2016년 4월분	1,118,020	140,640
주민세(종업원분)	2016년 5월분	1,145,280	248,630
주민세(종업원분)	2016년 6월분	1,148,710	134,160
합계		6,767,890	1,037,87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11

(별지 2)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11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1.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定)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을 것
3. 단체의 수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법 제22조제3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11

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어.「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활동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종류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12. 30. 보건복지부령 제4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3. 제1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활동지원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11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활동지원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6. "활동지원기관"이란 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7. "활동지원인력"이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0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활동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규모,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수의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종류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활동지원기관의 의무)
①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요청받았을 때에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활동지원인력의 수급(需給)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② 활동지원기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의 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자료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활동지원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활동지원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비용의 명세서, 제4항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할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의 내용 및 보존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서식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활동보조인)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보조인"이라 한다)이 되려는 사람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인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인의 교육과정, 교육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11

정한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활동지원기관 운영의 재무·회계 기준)
활동지원기관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그 운영에 관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2조(감사)
① 법인의 감사는 당해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대표이사는 시설의 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등의 관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전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전임자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지정하거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직원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한 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법인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11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2017. 5. 29. 대통령령 제28074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 생략 끝.